

미세먼지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가이드

미세먼지란 공기 중의 고체상태와 액적(液滴)상태 입자의 혼합물을 말하며, 크기에 따라 미세먼지(PM-10, 지름이 10 μm 보다 작은 입자)와 초미세먼지(PM-2.5, 지름이 2.5 μm 보다 작은 입자)로 구분합니다.



| 대기오염경보(미세먼지) 발령기준

미세 먼지 (PM-10)	주의보	•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-10 시간당 평균농도가 $150\mu\text{g}/\text{m}^3$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
	경보	•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-10 시간당 평균농도가 $300\mu\text{g}/\text{m}^3$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
초미세 먼지 (PM-2.5)	주의보	•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-2.5 시간당 평균농도가 $75\mu\text{g}/\text{m}^3$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
	경보	•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-2.5 시간당 평균농도가 $150\mu\text{g}/\text{m}^3$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

※ 환경부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[별표 7]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

01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사항

민감군 확인

폐질환(천식 등)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, 고령자, 임산부 등 미세먼지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 영향을 받기 쉬운 노동자를 미리 파악하세요.

※ 건강진단 결과나 건강상담 자료, 설문조사 등을 통해 민감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정보 제공

미세먼지 농도, 주의보·경보 발령현황 등 옥외작업자에게 대기오염상황에 대한 정보와 예방조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세요.

교육 및 훈련

미세먼지의 유해성, 예방조치사항, 개인 위생관리, 마스크 착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세요.

마스크 지급·착용

적절한 마스크를 비치하고,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등 필요 시 옥외작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.

* 안전보건공단 인증(2급 이상) 방진마스크 또는 식약처 인증(KF80 이상) 보건용 마스크를 준비하세요.

* 마스크는 1회용이므로 작업내용, 시간 등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여유분을 준비하세요.

* 마스크 착용 시 현저한 호흡 불편을 느끼는 근로자의 경우 사전에 의사와 상담 후 착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.

휴식 및 중작업 일정 조정

미세먼지의 영향을 적게 받는 공간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가능한 중작업*은 다른 날에 하도록 일정을 조정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작업량을 줄여주세요.

* 중작업은 중량물 옮기기, 해머질, 텁질이나 도끼작업, 중량물이 담긴 손수레를 밀거나 당기는 작업 등 에너지 소모가 많은 작업을 의미합니다.

02 올바른 마스크 착용방법

▢ 접이형 제품 착용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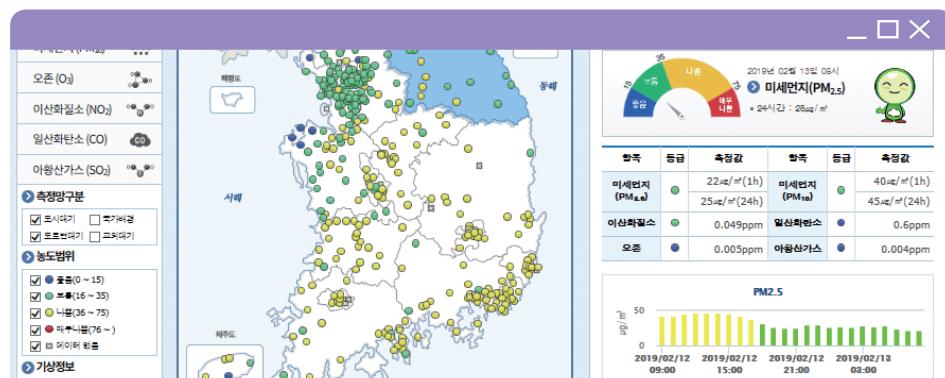
▢ 컵형 제품 착용법



03 미세먼지 농도 및 대기오염경보 현황 확인방법

▢ 인터넷 | 대기오염도 실시간 공개 시스템(<http://www.airkorea.or.kr>)을 활용한 확인

측정장소별, 시도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과거 측정자료까지 검색할 수 있습니다.



▢ 스마트폰 | 어플리케이션 「우리동네 대기정보」를 활용한 확인

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내가 위치한 지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
문의처 | 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부
Tel. 052-703-0622~0624

